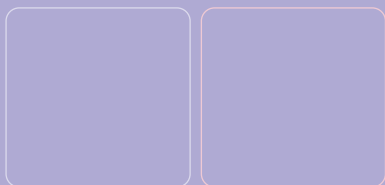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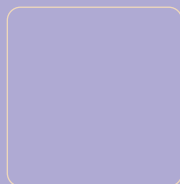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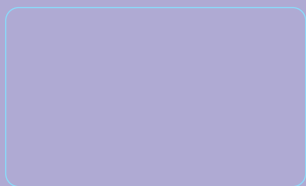


노르웨이의 육아정책 동향

| 이정원 · 이세원



*International
Trends and Issues in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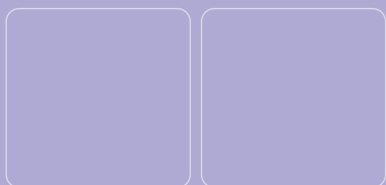


노르웨이의 육아정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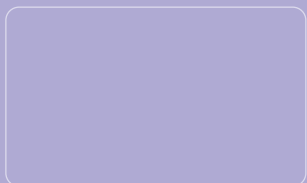
| 이정원 · 이세원

노르웨이의 육아정책 동향

| 이정원 · 이세원



*International
Trends and Issues in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발간사

최근 들어 많은 국가들이 육아지원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일찍이 인구 감소의 위기와 여성경제 활동의 보편화 추세에 대응하는 핵심 사회정책으로서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육아지원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함과 더불어 좀 더 효과적인 육아지원정책 대안을 모색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인적자원의 육성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며, 인생 초기인 영유아기 성장과 발달에 대한 공적투자가 여타 시기보다 가장 투자효과가 높다는 주요 선진국의 실증적 연구결과에 기인하여 영유아기 육아지원을 위한 세부 정책들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연속간행 되고 있는 세계육아정책동향은 각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최근 육아정책의 주요 이슈와 동향을 소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2006년도 일본과 스웨덴의 육아정책을 시작으로, 2007년도 호주와 영국, 2008년도 미국과 캐나다, 2009년도 핀란드와 프랑스, 2010년도에는 뉴질랜드와 독일, 2011년에는 일본과 대만 등 육아 선진국들의 육아정책 동향을 꾸준히 발간하여 왔습니다. 금년에는 2007년도에 발간된 호주편의 개정판과 노르웨이의 육아정책 동향을 새로이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세계육아정책 동향시리즈가 향후 우리나라 육아정책의 방향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육아정책을 개발하는 데 적극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목차

1장

들어가며 · 04

2장

노르웨이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 일반적 특성 · 06
2. 인구학적 특성 · 07
3. 역사와 문화 · 08
4. 양성평등 · 10

3장

노르웨이의 육아정책

1. 철학과 정책목표 · 13
2. 기본법 · 14
3. 서비스 유형 및 현황 · 15
4. 재정 및 비용 지원 · 19
5. 교직원 · 30
6. 질 관리 · 37

4장

노르웨이의 육아휴직제도

1. 배경: 여성의 경제정치활동 현황 · 43
2. 개요 · 49
3. 이용 현황 · 54

5장

맺음말 · 59

참고문헌

· 63

들어가며

요즘 젊은 부모들 사이에서는 ‘스칸디맘(Scandinomom)’, ‘스칸디대디(Scandidaddy)’라 일컬어지는 북유럽 스타일의 양육방식이 대세다.

이는 엄격한 스파르타식 교육을 버리고, 인성 교육, 책 읽 교육, 정서교육 등 아이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해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 공감대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 부모를 말한다고 한다.

‘스칸디나비아’는 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에 걸쳐 있는 반도로, 스칸디나비아 제국이란 기본적으로는 노르웨이·스웨덴·덴마크의 3개국을 가리킨다. 이 3개국은 서로 언어와 민족이 유사하고 역사상으로도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국가들로, 오늘날에는 모두 입헌군주제의 선진 공업국으로 발전해 있다.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주도로 포괄적이고 공적 서비스 중심인 복지국가가 되었다는 점에도 공통점이 있다.

한국사회에서 복지국가의 이상향으로 알려진 스웨덴을 포함한 스칸디나비아 국가는 먼 곳에 위치하나 매우 친숙한 의미로 다가오게 되었고, 양육방식조차 이들의 방식을 따라할 정도로 동경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국가들, 즉 북유럽 국가를 일컬을 때 우리는 대체로 ‘스웨덴’을 떠올리며 그 외에 국가들, 특히 ‘노르웨이’에 대해 알고 있는 바는 별로 없다. 노르웨이라고 하면 ‘피요르드’와 소설 제목에서의 ‘노르웨이의 숲’, 값비싼 유모차 ‘스토케’를 떠올리는 정도일 것이다.

북유럽 국가의 복지 제도와 문화를 동경하면서도 스웨덴의 과잉대표성으로 인해 노르웨이는 항상 우리의 관심에서 빗겨가 있었으며, 영유아 교육·보육제도(ECEC: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를 연구함에 있어서도 그랬던 것 같다.

민족적으로나 지리적 위치 면에서도 유사한 북유럽 복지국가에 속하나, ECEC의 측면에서 노르웨이는 스웨덴이나 덴마크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며,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유사한 문제들을 겪어왔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있었다는 점에서 본고를 통해 살펴볼 가치가 있을 것이다.

노르웨이는 북유럽 복지국가에 속하면서도 과거에도 완벽한 ECEC제도를 갖춘 국가가 아니었고 지금도 시샘을 받을만한 완벽한 ECEC제도를 갖춘 국가는 아니어서 더욱 편안한 탐구대상이다. 그럼에도, ECEC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고 있고 ECEC 정책 개혁에 무엇보다 ‘아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국가 못지 않게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국가일 것이라 생각된다.

노르웨이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 일반적 특성

노르웨이의 정확한 국가명은 ‘노르웨이 왕국 (Kingdom of Norway)’이며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위치해 있다. 국가명에서 드러나듯 현재 국왕이 존재하는 입헌군주제로 정부형태는 내각책임제이다. 이에 현재 노르웨이의 국가 수장은 국왕인 헤럴드(Harald) 5세이나 정부의 수장은 앤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 수상이다.

노르웨이의 언어는 노르웨이어(Bokmal and Nynorsk)이나 일부지역에서는 소수민족인 사미(Sami)족의 사미(Sami)어가 공식 언어로 사용된다.

노르웨이의 주요 특성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노르웨이의 주요 특성

- 국 명: 노르웨이 왕국(Kingdom of Norway)
- 수 도: 오슬로(Oslo)
- 면 적: 32,37만 Km²
- 인 중: 노르웨이인
- 언 어: 노르웨이어
- 종 교: 루터복음교(헌법상 국교이나 신앙의 자유 보장)
- 정부 형태: 내각책임제(입헌군주제)
- 경제 현황(2012년 기준)
 - GDP: 4,998억불
 - 1인당 GDP: 64,789불(추정)

자료: www.mofa.go.kr

2. 인구학적 특성

2013년 1월 현재 노르웨이의 6세 미만 아동인구는 총 375,014명으로 노르웨이 총 인구 5,051,275명 중 약 7.4%에 해당한다¹⁾. 노르웨이의 6세 미만 아동 인구는 1900년대 초반 현재의 2배 이상인 총 인구의 15%에 달하였다. 1900년 이후 아동 인구는 최소 244,100명(1938년)에서 최고 394,000명(1982년) 사이에서 크게 변동하여 왔다.

2012년 합계출산율은 1.85명이며 2009년 1.98에 이른 이후 감소추세에 있다. 노르웨이 부모가 첫 자녀를 출산하는 연령은 어머니 28.5세, 아버지 31.2세이며 2012년 출생아 중 56.5%는 법적 결혼 상태에 있지 않은 어머니에게서 출생하였다²⁾.

1) Statistics Norway(March, 2013). Population by age, sex, marital status and citizenship(www.ssb.no에서 인출)

2) Statistics Norway(April, 2013). Births, 2012(www.ssb.no에서 인출)

3. 역사와 문화

노르웨이는 유럽국가들 중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에 가입하지 않은 몇몇 안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노르웨이가 EU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노르웨이의 독특한 역사적 경험에 기인한다.

노르웨이는 몇 차례 정치, 경제적으로 외국의 지배 하에 있었다. 15~18세기의 약 300년간 덴마크의 지배를 받기도 했으며, 1814년에는 나폴레옹 군대를 격파한 스웨덴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다. 노르웨이가 마침내 독립국이 된 것은 1905년의 일이다. 600년 가까이 이웃나라의 지배하에 있던 노르웨이는 북대서양과 연결된 전략적 위치 때문에 또다시 제 2차 세계대전 기간(1940~1945년)중 독일군에게 일방적인 침략을 당해 독일의 지배하에 있었다.

노르웨이는 이러한 주변 국가들로부터의 지배 경험으로 주권문제에 민감하며, 석유, 어업자원 등 부존자원에 대한 주권포기 우려에 유럽공동체(EC: European Community) 가입안 및 EU 가입안이 각각 1972년, 1994년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독특한 경험이 있는 국가다.

그러나, 노르웨이는 지난 몇 십년간 국제 정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무력 사용 관련 국제법 발전, 인권신장 및 군축, 핵 확산 방지, 국제환경협정의 개선, 공정한 교역규범 등 국제사회 주요 이슈를 해결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왔고, 전세계 분쟁지역을 망라하는 평화 중재 노력, 대북 인도적 지원,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 지구온난화에 대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등 국제 사회에는 적극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노르웨이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양성 평등 증진을 위한 노력이

세계에서 가장 우위에 속한다는 것이다.

직장에서 남녀가 평등한 대우를 받는지를 감시하는 평등지위 옴부즈맨 제도 시행, 공직 임명 뿐 아니라 정당 직원 채용과 선거절차에도 쿼터제를 도입하였으며, 2006년부터는 주요기업 이사진의 40%이상 여성할당의무를 법제화하였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의 양성 평등에도 적극적이어서 ‘아버지 육아휴직할당제’를 세계 최초로 도입했으며, 실질적인 보장 노력으로 2011년 현재 남성의 육아휴직(아버지 할당제) 이용률이 64.4%에 이르고 있다³⁾.

이러한 양성 평등 증진을 위한 노력을 통해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재정립함에 따라 1960년 26.1%였던 15~64세 여성 경제 참여율은 2012년 25~29세 81%, 30~39세 85%, 40~49세 85%로 증진되었다. 이에 출산·양육기 여성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경제활동참가율의 M자 곡선이 나타나지 않고 같은 연령대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⁴⁾.

노르웨이의 이러한 역사적, 문화적 특성은 ECEC 제도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민주주의와 정의로운 사회 추구, 양성 평등과 조화는 모든 부분에서 녹아 있는 노르웨이의 문화로 ECEC 제도 구축과 개선에 있어서도 철학적 배경이 되고 있다.

3) Statistics Norway(March, 2013). Indicators for gender equality in municipalities, 2011(www.ssb.no에서 인출)

4) 2012년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5~29세 86%, 30~39세 91%, 40~49세 91%이다. Statistics Norway(2013). Statistical Yearbook of Norway.

4. 양성평등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르웨이는 양성 평등 증진 노력에 있어 세계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나라이다. 이에 관련 국제 여성 지표에서 나타나는 노르웨이의 위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성 격차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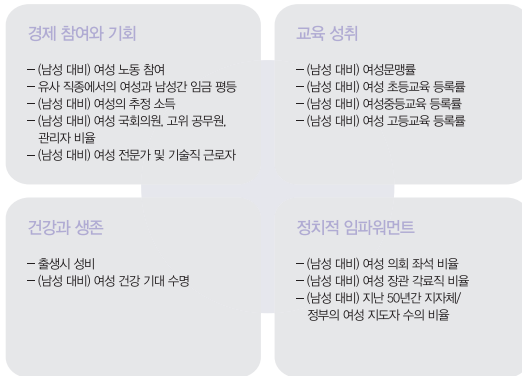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은 2006년 이래로 전 세계 성 불평등의 규모와 범위를 파악하기 위한 기본틀을 제공하기 위해 '성 격차 보고서(The Global Gender Gap Report)' 를 제공하고 있다(www.weforum.org). 2012년에는 전 세계 135개국을 대상으로 경제, 정치, 교육, 건강과 관련한 지표를 개발하여 성 격차 지수를 비교하였는데, 노르웨이는 아이슬란드와 핀란드에 이어 3위를 차지하였고, 2006년 이래 계속적으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표 2〉 성 격차 지수 지표(2008~2012)

국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서열	점수	서열	점수	서열	점수	서열	점수	서열	점수
아이슬란드	4	0,7999	1	0,8276	1	0,8496	1	0,8530	1	0,8640
핀란드	1	0,8239	3	0,8227	2	0,8404	2	0,8404	2	0,8403
노르웨이	3	0,8139	4	0,8139	4	0,8024	4	0,8044	3	0,8159
스웨덴	3	0,8139	4	0,8139	4	0,8024	4	0,8044	4	0,8159
아일랜드	8	0,7518	8	0,7597	6	0,7773	5	0,7830	5	0,7839
한국	108	0,6154	115	0,6146	104	0,6342	107	0,6281	108	0,6356

자료: Ricardo Hausmann, Laura D. Tyson & Saadia Zahidi(2012),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2, World Economic Forum.

성 격차 지수는 4개의 하위 지표의 합으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는 경제 참여와 기회, 두 번째는 교육 성취, 세 번째는 건강과 생존, 네 번째는 정치적 임파워먼트이다.



자료: Ricardo Hausmann, Laura D. Tyson & Saadia Zahidi(2012),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2, World Economic Forum.

[그림 1] 세계경제포럼(WEF)의 성 격차 지수(Gender Gap Index)

나. 어머니가 되기 가장 좋은 나라

국제아동권리기관인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에서는 지난 2000년부터 세계 각국 여성의 보건, 경제, 교육수준과 영아 사망률 등의 지표를 바탕으로 매년 전 세계 여성과 아동의 생활 환경 수준을 평가해 발표하는 '어머니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2012년에는 165개국을 대상으로 <표 3>의 지수를 조사하여 종합한 순위를 정하였는데, 노르웨이가 어머니가 되기 좋은 나라 1위로 선정되었다.

2) 1997년부터 기존 시설에 대한 운영비 보조금 제도는 없어지고, 부모 보조금으로 일원화됨.

3) National Quality Framework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로 축약하여 National Quality Framework로 기술함.

〈표 3〉 어머니가 되기 좋은 나라 주요 지수

여성의 보건 현황	- 일생 출산사망 위험도 - 현대적인 피임방법 사용률 - 출산시 숙련된 조산사의 참여 - 기대수명
여성의 교육적 지위	- 기대 정규교육기간
여성의 경제적 지위	- 남성 대비 여성 수입 비율 - 출산휴가제도
여성의 정치적 위상	- 여성 국회의원 비율
아동 보건	- 5세 미만 영유아 사망률 - 5세 미만 영유아의 경도 및 중도 체중미달 비율 - 유치원 등록 비율 - 초등학교 등록 비율 - 성평등 지수 - 중등교육 등록 비율 -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는 인구 비율 등

자료: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 보도자료(2012. 5. 8). 세계에서 어머니가 가장 살기 좋은 나라는?

1위로 선정된 노르웨이와 165위로 최하위국인 니제르와의 주요 지표를 비교하면 〈표 4〉와 같은데, 여성의 기대 수명은 양국이 27년의 차이가 나고, 여성의 일생 중 출생사망 위험도는 노르웨이가 약 0.01%인 반면 니제르는 약 6%이며, 여성의 기대 정규 교육기간은 노르웨이가 18년인데 비해 니제르는 4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 2012 '어머니가 되기 좋은 나라' 최상위국과 최하위국 주요 지표 비교

주요 지표	노르웨이	니제르
여성의 기대 수명(세)	83	56
여성의 일생 출산사망 위험도	7,600명 중 1명	16명 중 1명
여성의 현대적인 피임방법 사용률(%)	82	5
출산시 숙련된 조산사의 참여율(%)	-	33
여성의 기대 정규 교육기간(년)	18	4
여성 국회의원 비율(%)	40	13
5세 미만 영유아 사망률(1,000명당)	3명	143명

자료: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 보도자료(2012. 5. 8). 세계에서 어머니가 가장 살기 좋은 나라는?

노르웨이의 육아정책

1. 철학과 정책목표

노르웨이에서의 영유아 교육·보육(ECEC: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은 취학연령 미만 아동을 위한 것으로 현재 노르웨이의 ECEC를 위한 기관은 ‘유치원’이다. 노르웨이어로 ‘바네하겐(barnehager)’인 유치원은 아동기의 가치 그 자체에 대한 존중, 그리고 보호와 교육을 위한 총체적인 접근으로서 설립되었다⁵⁾.

노르웨이를 포함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등을 포함한 ‘북유럽국가’의 주요한 문화적 측면으로 ‘아동중심성’이 언급되는데 이로 인해 노르웨이의 유아교육기관은 “노르웨이 사람의 행복한 어린시절”을 지켜 주는 기능을 가진 기관이라고 인식된다⁶⁾.

5) Norwegian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October, 2013).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ECEC) in Norway, FactSheet.

6) 요한나 예이너르스 도티르·쥬디스 와그너 엠클, “북유럽의 아동기와 유아교육”, 한유미·권정자·신미자 옮김, 한권(2011).

2005년 이후 ① 유치원의 확충, ②부모 부담 상한액(Maximum parental fees)설정, ③ 공사립 유치원간 재정지원의 형평성 제고, 그리고 ④ ECEC의 질 제고가 ECEC 관련 주된 정책 목표가 되고 있다⁷⁾.

2. 기본법

노르웨이 육아정책을 관장하는 기본법은 1975년에 최초로 제정된 유치원법(Kindergarten Act)이다. 현재의 유치원법은 2006년 1월부터 발효된 것이다.

유치원법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각 지역 유치원을 관할할 책임을 부여받으며, 유치원에 운영 지침을 제시하여야 하며 유치원은 이러한 지침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치원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내 수요에 충분한 유치원을 확보할 의무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사립 유치원은 유치원법에서 요구하는 유치원의 목적과 내용, 요구를 충족할 경우 인가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된다.

유치원 인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이며, 인가와 함께 유치원 운영 지침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7) Encouraging Qualit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ECEC),(www.oecd.org에서 인출)

3. 서비스 유형 및 현황

가. 육아지원 서비스 담당부처

노르웨이에서 ECEC, 즉 영유아 보육교육업무는 2005년까지는 아동가족부(Ministry of Children and Family Affairs)가 담당하였으나 2006년 교육연구부(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로 이관되었다⁸⁾.

현재 노르웨이의 유아교육·보육 기관은 '유치원'으로 통칭되며, 이에 가정보육시설(familebarnehager)도 포함되나 행정체제는 교육연구부로부터 담당부처가 통합되어 일원화되어 있다.

나. 육아지원 서비스 유형과 이용 현황

2010년 기준 1~5세 아동에 대한 낮시간 주양육자(기관)은 89.6%가 유치원, 부모가 9.2%, 베이비시터 0.6%, 친인척 0.4%, 기타 0.2%로 많은 부모가 낮시간 돌봄제공자로 유치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⁹⁾.

노르웨이의 정규 보육서비스 제공기관은 유치원(barnehager)과 가정보육시설(familebarnehager)로 구분되며, 이밖에도 개방형유치원(open barnehager), 그리고 학교 전후 시간 이용이 가능한 학동보육시설(Skolefritidordningen)이 있다(서문희·양미선·송신영, 2011: 44).

영유아의 경우 유치원의 증가, 2004년 부모부담 상한액 도입, 2009년 1세아의 유치원 이용에 대한 법적 권리 도입, 유치원에 대한 공공재정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정부가 더욱 유치원 서비스의 질과 프로그램 개선에 집중

8) 2005년 이전 교육, 연구, 교회부(The Ministry of Education, Research and Church Affairs)는 학교와 학교 밖 보호, 교사양성을 주관하였다(나정·장영숙, 2002: 205).

9) Statistics Norway(May, 2011), Child-care, 2010(www.ssb.no 에서 인출)

하면서 유치원 이용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유치원 서비스는 0-5세를 커버하며, 가정보육시설은 종일제와 시간제 또는 유치원 교사의 감독 하에 운영되며, 개방형 유치원은 부모와 아동이 함께 참여할 수 있고 유치원 교사들의 지도하에 시간제 활동을 제공한다¹⁰⁾.

다. 공립 유치원 현황과 서비스 이용율

노르웨이에서 아동들은 대부분 5세 이전에 취학전 교육과 보호의 통합 체계에서 교육을 받기 시작한다(OECD, 2013: 2)¹¹⁾. 2005년 ECEC에 대한 책임이 아동가족부(the Ministry of Children and Family Affairs)에서 교육연구부(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로 이전된 이후 정부는 전생애를 통한 배움의 첫 단계를 제공하는 것과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적극적 정책의 한 부분으로 유치원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¹²⁾.

2012년 현재 노르웨이의 유치원은 6,397개원이며, 국공립 유치원이 2,986개원, 사립이 3,411개원으로 사립유치원의 비중이 조금 더 높다. 유치원 수는 2002년 5,845개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 6,705개원에 이르렀으나 그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국공립유치원의 비중은 2002년 전체 5,845개원 중 2,943개원의 50.4%에서 감소하여 2007년 45.4%까지 낮아졌다가 2012년에는 약 46.7% 수준으로 다소 회복된 상태이다(표 5 참조).

노르웨이는 현재 공립 유치원보다 사립유치원의 비중이 높으나, 공립

10) Norwegian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October, 2013).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ECEC) in Norway, FactSheet.

11) OECD(2013). Education at a glance 2013-country notes and key fact tables.

12) Encouraging Qualit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ECEC),(www.oecd.org/edu/school에서 인출)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이 150,777명(52.7%)로 사립유치원 이용 아동수 135,376명보다 많다(표 6 참조).

이는 시설 수는 사립시설이 공공시설보다 많으나 사립시설은 가정보육시설이 포함되는 등 규모가 작기 때문이다(서문희 외, 2011: 45).

〈표 5〉 유치원 수 및 원아수 변화 추이

단위: 개원, 명, %

연도	유치원 수			원아수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1~5세중 비중
2002	5,845	2,943	2,902	198,262	65.9
2003	5,924	2,911	3,013	205,172	69.1
2004	6,035	2,853	3,182	213,097	72.2
2005	6,278	2,858	3,420	223,501	76.0
2006	6,436	2,901	3,535	234,948	80.4
2007	6,622	3,006	3,616	249,815	84.3
2008	6,705	3,082	3,623	261,886	87.2
2009	6,675	3,096	3,579	270,174	88.5
2010	6,579	3,046	3,533	277,139	89.3
2011	6,469	3,000	3,469	282,737	89.7
2012	6,397	2,986	3,411	286,153	90.1

자료: Statistics Norway(June, 2013), Kindergartens, 2012 final figures.(www.ssb.no에서 인출, 재구성)

2012년말 기준 유치원을 이용 중인 아동은 286,153명으로 전체 1~5세 미만 아동인구의 90.1%에 해당한다. 1~2세 중에서는 80.2%, 3~5세 중에서는 96.6%가 유치원을 이용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5세 아동 중 유치원 이용아동의 비율은 2002년 65.9%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90.1%에 이르고 있다.

연령별로는 4세의 이용아수가 가장 많아 61,556명이며 0세의 이용아수는 적으나, 3~5세의 유치원 이용아수는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며, 1세부터 유치원 이용아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표 6〉 기관유형별 · 연령별 유치원 원아수(2012)

단위: 개원, 명

유형		아동 연령						
국공립	사립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150,777	135,376	2,318	42,754	57,384	61,409	61,556	60,338	394

자료: Statistics Norway(June, 2013), Kindergartens, 2012 final figures.(www.ssb.no에서 인출, 재구성)

라. 연령별 · 이용 시간별 이용아수

2012년 기준으로 노르웨이에서는 전체 0~6세 유치원 이용아 중 90.3%인 258,425명이 주당 41시간 이상, 즉 하루 8시간 이상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어 영유아들이 상당히 긴 시간을 유치원에서 보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아동의 유치원 이용비율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고, 이용 시간도 연령별 차이가 나타난다. 유치원은 0세아 중 3.8%만이 이용하고 있으나 2세부터는 각 연령 아동의 90%이상이 유치원을 이용하여 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유치원 이용 아동 중 월 41시간 이상 즉 하루 8시간 이상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의 비중도 0세 83.9%, 1세 89.3%, 2세 90.0%, 3세 90.6%, 4세 90.7%, 5세가 91.0%, 6세 91.4%로 아동의 연령이 상승할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유치원을 이용하는 0세아 2,318명 중 1,945명(83.9%)이 주당 41시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0세아의 경우도 장시간 이용하는 아동의 비중이 크게 나타난다. 그러나 전체 0세아 중에서 유치원 이용아의 비중이 3.8%에 불과함을 고려한다면 0세아는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기관을 이용하는 0세아는 장시간 이용이 필요한 특별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노르웨이의 육아휴직이 최대 59주까지 사

용할 수 있고, 급여도 최소 80%~100% 보장이 가능하여 대부분의 부모들이 0세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을 이용하여 자녀를 돌보는 형태가 일반적인 것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표 7〉 연령별 · 이용시간별^{주)} · 유치원 원아수(2012)

단위: 명, %

구분	전체	0~8 시간	9~16 시간	17~24 시간	25~32 시간	33~40 시간	41시간 이상	각 연령별 이용 비율
0~6세	286,153	83	309	3,233	11,848	12,255	258,425	
0세	2,318	12	22	94	165	80	1,945	3.8
1세	42,754	15	61	756	2,149	1,586	38,187	69.6
2세	57,384	20	64	686	2,638	2,354	51,622	90.5
3세	61,409	17	50	600	2,596	2,521	55,625	95.3
4세	61,556	10	50	549	2,335	2,808	55,804	97.1
5세	60,338	8	59	545	1,959	2,885	54,882	97.6
6세	394	1	3	3	6	21	360	-

주: 주당 시간임.

자료: Statistics Norway(June, 2013), Kindergartens, 2012 final figures.(www.ssb.no에서 인출, 재구성)

4. 재정 및 비용 지원

가. 개요

노르웨이의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대비 교육기관에 대한 지출 비율은 2000년 6.8%에서 2010년 7.6%로 상승하였다. 이는 유럽 연합(EU) 국가 평균 5.9%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국가 평균 6.3%보다 높은 수치로 OECD 국가 및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 Group of 20)에 속하는 33개 국가 중 4위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높은 편이다.

총 공공지출액 대비 교육에 대한 공공지출액 비율도 2000년 14.0%에서

15.2%로 상승하였으며, 2010년 OECD 평균 13.0%, EU 평균 11.4%보다 역시 높으며, 32개국 중 9위에 해당한다.

2010년 기준 초·중·고 학생 1인당 지출액도 각각 12,255\$, 13,852\$, 18,512\$로 동일년도 OECD 국가 및 EU국가 평균 보다 월등히 높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그러나 취학전 유치원 교육에 대한 학생 1인당 지출액 수준은 2010년 6,610\$로 OECD 평균 6,762\$, EU 국가 평균 7,085\$ 보다 낮으며 32개국 중 14위로 중간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즉, 노르웨이의 교육에 대한 지출 수준은 높은 편이나 영유아를 위한 교육에의 지출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교육기관에 대한 사적 지출 부담 수준에서도 찾을 수 있다. 고등교육기관의 학생에 대한 사적 부담의 비중이 2010년 4.0%에 불과

〈표 8〉 노르웨이의 교육 재정 투자(2010)

구분	노르웨이	OECD 평균	EU21 평균	순위 ¹⁾
연간 학생 1인당 지출(USD)				
취학전 교육	6,610 USD	6,762 USD	7,085 USD	14위
초등 교육	12,255 USD	7,974 USD	8,277 USD	2위
중등 교육	13,852 USD	9,014 USD	9,471 USD	3위
고등 교육	18,512 USD	13,528 USD	12,856 USD	6위
GDP 대비 교육기관 지출비율(%)	7.6	6.3	5.9	4위
교육에 대한 공공지출 비율 (총 공공지출 대비(%))	15.2	13.0	11.4	9위
교육기관에 대한 사적 지출 비중(%)				
취학전 교육	15.4	17.9	11.3	15위
초등·중등 교육	2.9	8.5	6.1	-
고등 교육	4.0	31.6	22.7	30위

주: 1) OECD 국가 및 G20국가 중 순위임.

2) - 활용가능한 자료가 없음을 의미함.

자료: OECD(2013), Education at a glance 2013-country notes and key fact tables.

하여 OECD 평균 31.6%나 EU 평균 22.7%에 비해 개별 가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교육비 부담은 전체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음에 반해, 취학 전 교육(유치원)에 대한 사적 부담 비중은 데이터 수집 가능한 28개국 중 15위로 중간 이상으로 높은 부담 수준을 보였다.

나. 유치원 이용 비용

1) 개요

노르웨이도 다른 노르딕 국가와 마찬가지로 보육비용의 상당부분을 국가가 책임진다(서문희 외, 2011: 74). 노르웨이의 유치원은 중앙정부와 지자체로부터의 공공 재정 지원과 부모의 부담금으로 운영된다. 공공 재정 지원은 매년 증가하여 2011년 기준 GDP의 1.7%에 육박하였다¹³⁾. 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2004년 국가 수준에서 한 달 기준 부모부담 한도액(maximum parent' fees)을 책정하여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비용상한제 도입으로 총 비용 중 부모 부담 비율은 19% 정도로 공사립이 동일하며(서문희 외, 2011: 4) 국가는 공사립 기관에 차별없이 설립·운영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¹⁴⁾. 2006년 1월부터 발효된 유치원법에는 지역내 유치원을 관할하는 지자체는 모든 인가받는 비공영(사립)유치원에도 일반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을 제공하여야 하며, 공공 보조금과 관련해서 공립 유치원과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¹⁵⁾.

노르웨이의 유치원 이용 시 부모부담 비용은 의회에 의해 최고액이 설

13) Norwegian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October, 2013).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ECEC) in Norway FactSheet.

14)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y.(www.regjeringen.no에서 인출)

15) the kindergarten Act, Section 14. Municipal grants to approved non-municipal kindergartens

정되며, 이렇게 설정된 최고액 내에서 가구소득, 자녀 수 등에 따라 차등화된 요금제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노르웨이에서 매년 1월 실시되는 가구의 공사립 유치원 종일반 이용 비용에 대한 조사 결과, 2013년에는 428개 도시 중 93%에서 노르웨이의 회에서 정한 2,330 NOK의 비용 상한선과 동일한 월 비용을 적용하고 있었다. 또, 428개 도시 중 22.7%에서 가구소득에 따라 차등화된 비용을 적용하며, 가구소득에 관계없는 정액(flat)비용제는 76.4%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수에 연동한 비용할인제 적용 비율은 매우 높아서, 98.1%가 둘째 자녀에 대해 30%이상 할인된 비용을 적용하며, 96.3%는 셋째 자녀에 대해 50%이상 할인된 비용을 적용하고 있다(Scheistrøen, 2013).

모든 지자체는 저소득 가구에 유치원 비용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립 유치원에 대해 가구소득에 따른 비용할인제를 제시할지 여부는 지자체의 결정에 달려 있다¹⁶⁾.

〈표 9〉 노르웨이 유치원 이용 비용 현황(2013.1)

단위: %	
구분	비율
소득에 따른 차등 비용 적용	22.7
정액(flat)비용제	76.4
다자녀 할인, 둘째 자녀에 대한 30%이상 비용할인제 적용	98.1
다자녀 할인, 셋째 자녀에 대한 50%이상 비용할인제 적용	96.3
지자체 비용할인제 적용 사립유치원 비율	61.0

자료: Scheistrøen, J.(June, 2013), Undersøking om foreldrebetaling i barnehagar, Januar 2013.(www.ssb.no에서 인출)

16) Statistics Norway(June, 2013), Households' payments in kindergartens, price level survey, 2012/2013.

2) 공립 유치원

2013년 1월 실시된 '가구지출조사(The Household payments survey)' 결과에 따르면 공립 유치원에 대한 부모 부담액은 2012년에 비해 거의 차이가 없다. 공립 유치원에 대한 월평균 최저 지출 비용은 1,564 NOK이며, 평균 최고 지출액은 2,326 NOK이다¹⁷⁾.

가구 연간 소득 250,000 NOK, 375,000 NOK, 500,000 NOK에 대한 국가 기준 월 요금은(급간식, 기타 추가 비용 제외)은 2013년 1월 현재 각각 2,125 NOK, 2,258 NOK, 2,298 NOK로 책정되어 있다¹⁸⁾. 이는 연간소득 250,000 NOK 가구에 대해 전년도 대비 0.7%가 감소한 요금이다 (Scheistrøen, 2013).

유치원 요금 체계는 지역별로 차이가 커서, 남부와 동부 지역의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저렴한 최저요금, 중부와 북부 지역에서는 높은 최저요금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최저요금제의 차이는 남부와 동부에서 가

(표 10) 소득에 따른 가구 월평균 공립유치원 부모부담액(1자녀)

단위: NOK

연도	하한액	가구소득			상한액
		250,000	375,000	500,000	
2008	1,537	2,089	2,249	2,297	2,317
2009	1,596	2,113	2,265	2,291	2,293
2010	1,549	2,079	2,218	2,262	2,292
2011	1,573	2,090	2,229	2,270	2,298
2012	1,592	2,145	2,262	2,297	2,324
2013	1,564	2,125	2,258	2,298	2,326

자료: Statistics Norway(June, 2013). Households' payments in kindergartens, price level survey, 2012/2013. (www.ssb.no에서 인출)

17) Statistics Norway(June, 2013). Households' payments in kindergartens, price level survey, 2012/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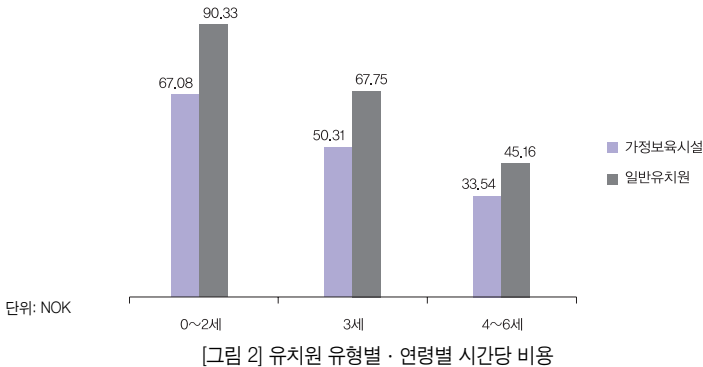
18) 이는 주당 41시간 이상 종일제로 이용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구소득에 차등화된 요금제가 주로 적용되고, 중부와 북부에서는 정액 요금제가 빈번하게 적용되고 있는 결과이다. 공립유치원의 93%에서 2,330 NOK의 월 부모부담액 상한을 유지하고 있다¹⁹⁾.

3) 사립 유치원

사립유치원 중 지자체의 할인체계(rebate arrangement)를 따르는 비율은 61.0%에 해당한다(Scheistrøen, 2013).

2013년 1월 1자녀 가구에 대한 사립 유치원 부모부담 월평균 비용은 2,297 NOK이며, 사립유치원 중 92%에서 2,330 NOK의 부모부담 상한액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²⁰⁾.



유치원 이용에 소요되는 시간당 비용은 기관 유형과 아동 연령별 차이가 있어, 일반 유치원에서는 0~2세이는 시간당 90.33 NOK, 3세는 67.75 NOK, 4~6세는 45.16 NOK이며, 가정보육시설(Family day-care centres)에서는 0~2세

19) Statistics Norway(June, 2013). Household's payments in Kindergartens, price level survey, 2012/2013.

20) Statistics Norway(June, 2013). Household's payments in Kindergartens, price level survey, 2012/2013.

21) Statistics Norway(October, 2013).Accounts for private kindergartens, 2012.

67,08 NOK, 3세 50,31 NOK, 4~6세 33,54 NOK의 비용이 소요된다²¹⁾.

이러한 시간당 요금에 따라 이용 시간에 따른 월평균 일반 사립유치원 이용 요금을 계산하면 0~2세가 주당 8시간 미만 이용시 2,168 NOK에서 주 41시간 이상 이용시 16,259 NOK, 3세는 8시간 미만 이용시 1,626 NOK에서 41시간 이용시 12,194 NOK, 4~6세는 8시간 미만 이용시 1,084 NOK에서 주 41시간 이상 이용시 8,130 NOK에 이른다.

〈표 11〉 연령별 · 이용시간별 월평균 일반사립유치원 비용

단위: NOK

구분	0~8시간	9~16시간	17~24시간	25~32시간	33~40시간	41시간 이상
0~2세	2,168	4,697	7,588	10,478	13,369	16,259
3세	1,626	3,523	5,691	7,859	10,026	12,194
4~6세	1,084	2,349	3,794	5,239	6,684	8,130

자료: Statistics Norway(October, 2013), Accounts for private kindergartens, 2012. (www.ssb.no에서 인출)

가정보육시설(가정유치원)의 시간당 이용 비용에 따른 월평균 소요 비용도 0~2세가 8시간 이하 이용 시 1,610 NOK부터 41시간 이용시 12,074 NOK까지, 3세가 8시간 이하 이용 시 1,207 NOK에서 41시간 이상 이용 시 9,055 NOK, 4~6세가 41시간 이용 시 6,037 NOK까지 소요된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 사립유치원과 가정보육시설 이용에 소요되는 비

〈표 12〉 연령별 · 이용시간별 월평균 가정보육시설 비용

단위: NOK

구분	0~8시간	9~16시간	17~24시간	25~32시간	33~40시간	41시간 이상
0~2세	1,610	3,488	5,634	7,781	9,927	12,074
3세	1,207	2,616	4,226	5,836	7,446	9,055
4~6세	805	1,744	2,817	3,890	4,964	6,037

자료: Statistics Norway(October, 2013), Accounts for private kindergartens, 2012. (www.ssb.no에서 인출)

용의 대부분을 지자체와 정부에서 보조하고 있다.

이에 2012년 사립유치원 운영을 위한 총 지출 중 가구 부담액은 17%에 해당하였는데, 이는 2011년보다 1% 감소한 것이다. 동기간 중 지자체 보조금이 82%까지 증가했으며, 주정부와 기타 지자체 보조금이 3%를 충당하고 있다.

4)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지원

2009년 노르웨이 정부가 모든 아동에 대해 유치원 입학의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하였는데, 이는 모든 아동에 대한 ‘좋은 출발(good start)’ 과 이를 통한 사회적 평등 보장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아동복지 서비스 대상 아동과 장애아동은 유치원 입소에 우선순위가 부여되었으며 지자체가 이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정부는 지자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며²²⁾ 지자체는 이를 재원으로 소수 언어 가정 아동의 통합과 언어 발달을 위해 특별한 지원을 하고 있다²³⁾.

노르웨이 인구의 1.8%를 차지하는 Sami 족이 이러한 소수 언어 가정에 해당되는데, 소수민족 가정의 아동들 중 취학시 노르웨이어에 능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연구 결과로부터 다문화 소수민족에 대해 특별히 초점이 두어지게 되었다.²⁴⁾ 유치원 기본계획(Framework Plan for the Kindergarten)에서는 노르웨이의 유치원이 소수 언어 가정 아동들의 노르웨이어 실력을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향상시킬 뿐 아니라 이들의 모국어도 사용하도록 돕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유치원 교직원을 위해 다언어·다문화

22) Thorud, E., Haagenen, E., Henningsen, M.S., Hegna, M., (2012), International Migration 2010-2011: SOPEMI Report for Norway, Norwegian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 Norwegian Ministry of Children, Equality and Social Inclusion · Norwegian Ministry of Justice and the Police · Norwegian Ministry of Labour.

23) Norwegian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October, 2012),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Norway, FactSheet.

24) Haug, K.H.& Storø, J.(2012), Kindergarten-a universal right for children in Norway, (www.childresearch.net/projects/ecec/2013-01.html에서 인출)

관련 자료를 개발·보급해 왔다. 이를 위해 소수 언어 가정의 아동들의 유치원 입소율이 증가되어야 한다는 목표를 지는데, 이 목표는 전체 아동의 유치원 입소율 대비 소수언어가정 아동의 유치원 입소율로 측정된다.

2000년 전체 아동 유치원 입소율이 62%였음에 비해 소수 언어 가정 아동 유치원 입소율은 44%였으나, 2007년 각각 84% 대비 63%, 2010년 89% 대비 71%로 전체 아동의 유치원 입소율과 소수언어 가정 아동의 유치원 입소율이 모두 급격히 증가하였다(Thorud, Haagensen, Henningsen & Hegna, 2012).

5) 유치원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cash for care)

노르웨이 영유아의 유치원 이용률은 2012년 기준 1~5세아의 90.1%에 달하나, 유치원 이용은 의무가 아니며 이에 모든 영유아가 유치원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0~2세 영아의 유치원 이용률은 3~5세에 비해 낮고, 특히 0세의 경우는 2012년 기준 오직 3.8%만이 유치원을 이용하였다²⁵⁾.

노르웨이에서는 부모에게 부모의 육아휴가가 끝난 후 부모가 1, 2세 자녀를 직접 양육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영아 양육을 위한 현금수당제도(Cash for care)를 1998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는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갖도록 돕고 자녀양육 방식으로 유치원을 이용할지, 부모가 직접 돌볼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기 위해 도입되었다(서문희 외, 2011: 80).

양육수당은 이후 대상자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만 2세아의 부모는 지금 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었다. 이러한 개정법은 2012년 8월부터

25) Statistics Norway(June, 2013). Kindergartens, 2012 final figures.(www.ssb.no에서 인출)

발효되어²⁶⁾, 이후 양육수당은 만 1세(생후 13~24개월) 아동만을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다. 즉,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13~18개월 아동의 부모에게는 매달 약 5,000 NOK(약 803\$)의 수당이, 19~23개월 아동의 부모들에게는 3,303 NOK(약 530\$)이 지급되고 있다²⁷⁾. 양육수당의 금액은 국회(the Storting)가 정하며 비과세 대상이다.

양육수당은 국가가 지원하는 유치원을 주당 33시간 미만 시간제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차등하여 받을 수 있다(서문희 외, 2011: 80).

2010년에는 1~2세아 중 유치원을 종일제로 이용하지 않는 68%가 이 수당을 지급받았는데, 자녀수가 1명일 때 양육수당 수혜 비율이 다소 높고, 어머니가 미취업모일 경우 수혜 비율이 가장 높았다(서문희 외, 2011: 80~81).

2010년 양육수당 수급자 중 41%는 만약 양육수당이 향후 중단될 경우 자녀를 유치원에 보낼 것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보고된다²⁸⁾.

〈표 13〉 제특성별 양육수당 수혜 비율: 2010

단위: %

구분	1~2세		연령			6세 미만 자녀수			모의 근로시간	
	전체	1세	2세	1명	2명	3명	주37시간 이상	주37시간 미만	휴직	미취업
비율	68	68	67	71	66	64	61	69	44	85

자료: Statistics Norway(2011). Children aged 1-2 Proportion of children in different groups for whose parents receive cash-for-care; 서문희 외(2011)에서 재인용.

한편 2012년 노르웨이에서는 아동이 있는 가정에 대해 총 345억 NOK의 현금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2011년에 비해 6억 NOK가 증가한 것

26) Ministry of Children, Equality and Social Inclusion(April, 2012). Family Policy(www.regjeringen.no에서 인출)

27) Haug, K.H.& Storø, J.(2012). Kindergarten-a universal right for children in Norway.(www.childresearch.net에서 인출)

28) Statistics Norway(May, 2011). Child-care, 2010(www.ssb.no에서 인출)

이었다. 그러나, '가족수당(family allowance)' 과 '육아휴직급여(parental benefit on birth)' 을 제외한 대부분의 현금 이전은 2011년 이후 감소하였다. 특히, 미취학 아동이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을 때 제공하는 '양육수당(cash for care)'은 2012년 12억 NOK이 지원되었으나 이는 2011년 대비 7%나 감소한 것이었다.

2006년에 양육수당 지원이 23억 NOK에 달하였던 것과 비교하면 2006~2012년간 약 46%가 감소하여 감소폭이 매우 큰데, 이는 유치원의 공급이 크게 확대되고 현금급여법(Cash Benefit Act)의 개정으로 양육수당액이 감소되고 2세아에 대해 유치원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이 폐지된데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 된다²⁹⁾.

〈표 14〉 아동이 있는 가족에 대한 현금 지원(2012)

단위: 명, NOK,mill, %

구분	수급자(명)	현금지원액 총액(NOK,mill.)	증감(%)	
			2011~2012	2006~2012
총 현금 지원	763,400	34,487.3	1.9	17.7
육아휴직급여 (Parental benefit on birth)	146,200	15,117.4	4.2	59.9
출산(입양) 보조금 (Maternity grant on birth and adoption)	9,800	346.9	-3.4	-19.0
가족수당 (Family allowance)	698,000	14,864.9	1.0	4.1
양육수당 (Cash for care)	63,700	1,222.9	-6.5	-45.9
한부모 한시 급여 (Transitional Benefit)	29,200	2,513.1	-0.8	9.4
아동수당 (Child care benefit)	27,900	368.2	-0.7	-28.4
교육급여 (Education benefit)	3,900	54.0	-0.6	-31.0

자료: Statistics Norway(August, 2013), Cash transfers to families with children, 2012.(www.ssb.no에서 인출)

29) Statistics Norway(August, 2013), Cash transfers to families with children, 2012(2013.8.22.); Statistics Norway(November, 2013), Norwegian Labour and Welfare Service-StatRes, 2012.(www.ssb.no에서 인출)

〈표 15〉 유치원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수급자와 지출액 추이

단위: 명, NOK, mill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수급자	101,212	91,112	80,059	72,639	68,000	65,600	63,700
지원액	2,261.9	1,942.2	1,649.4	1,461.6	1,353.9	1,308.3	1,222.9

자료: Statistics Norway(August, 2013). Cash transfers to families with children, 2012.(www.ssb.no에서 인출)

5. 교직원

가. 유치원 교직원 현황

노르웨이 통계청에서 2013년 6월 발간된 ‘유치원(Kindergartens)’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의 수는 총 91,239명이며, 이들 중 유치원의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인력은 83.3%에 해당한다. 유치원의 관리자(원장)와 교사들 중 공인된 유치원 교사 교육을 받은 비율은 85.7%이다.

〈표 16〉 노르웨이 유치원 교직원 현황(2012)

전체(명)	유치원의 주요인력 ³⁰ 비율(%)	공인된 유치원 교사 교육을 이수한 관리자 및 교사 비율(%)
91,239	83.3	85.7

주: ‘주요인력’은 관리직급, 교사, 보조교사를 의미함.

자료: Statistics Norway(June, 2013). Kindergartens, 2012 final figures.(www.ssb.no에서 인출, 재구성)

유치원의 주요 인력은 관리직급(director; head teacher), 교사(educational leader) 그리고 보조교사(assistant)이다³⁰⁾.

30) Norwegian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October, 2012).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ECEC) in Norway, FactSheet.

노르웨이 유치원 교직원은 2002년의 55,294명에서 2012년 91,239 명으로 교직원 총수가 2002~2012년 동안 약 65%가량 증가한 것으로 보고된다. 교직원 전체적으로는 65%가 증가하였으나 직무별로는 차이가 있어 2012년 현재 관리직급(director; head teacher)은 약 17.5%, 교사(educational leader)가 약 120%, 보조교사(assistant) 56.6%, 기타 교직원(other educational person)과 기타 유급도우미(other paid help)가 동일하게 29.3% 증가하여, 교사(educational leader)와 보조교사(assistants)의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이중언어 보조교사(bilingual assistant)는 2002년 대비 약 4.9% 감소하였다.

〈표 17〉 노르웨이 유치원의 연도별 · 직무별 교직원수

단위: 명(%)

연도	전체	관리직급	교사	보조교사	이중언어 보조교사	사무원	기타 교직원	기타 유급 도우미
2002	55,294	5,710	11,585	27,969	1,133	-	4,958	4,958
2003	58,422	5,768	12,320	28,889	1,231	-	5,218	5,218
2004	60,470	5,871	13,193	30,427	878	-	5,363	5,363
2005	64,728	5,934	14,715	32,676	1,015	-	3,639	5,639
2006	69,655	6,179	16,155	35,911	911	-	5,620	5,620
2007	76,089	6,425	18,187	39,536	1,070	-	5,905	5,905
2008	81,450	6,973	20,062	41,315	1,030	-	6,308	6,308
2009	84,884	6,974	21,951	42,652	1,041	-	6,187	6,187
2010	87,401	6,811	23,104	43,523	1,040	1,184	5,912	5,912
2011	88,823	6,679	24,343	43,732	1,013	1,374	5,976	5,976
2012	91,239	6,712	25,486	43,792	1,077	1,584	6,413	6,413
(계)	(100.0)	(7.4)	(27.9)	(48.0)	(1.2)	(1.7)	(7.0)	(7.0)

자료: Statistics Norway(June, 2013), Kindergartens, 2012 final figures, (www.ssb.no에서 인출, 재구성)

교직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보조교사이며, 관리자와 교사 등 지도급 직원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나. 성별·직무별 교직원 현황

아버지 휴가 등 남성의 양육 참여 제도가 눈에 띄게 잘 발달되어 있는 노르웨이에서는 유아기부터 성역할에 대한 바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유치원에서부터 교직원의 성비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아동·평등부(Ministry of Children and Equality)에서는 2004~2007년 사이의 육아지원기관에서의 성평등을 위한 시행계획(a plan of Action for Gender Equality in Day Care Centres 2004~2007)을 준비해 왔고 이 업무는 2006년 1월 이후부터는 교육연구부(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에서 수행하였다. 이 계획의 주요 목표는 노르웨이의 육아지원기관에서 남성 직원의 비율 20%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는 육아지원기관(유치원)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한 부분이었으며, 교직원 내 성별 균형을 이루기 위한 전략적 노력은 노르웨이 외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노르웨이가 선도적 위치에 있다³¹⁾. 그 결과 동기간 남성 교직원의 비율이 50%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으나, 많은 기관에서 상당히 단순한 방법으로 남성 교직원 고용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고된다³²⁾.

또한 많은 유치원 관리자들은 남성을 더 많이 채용하고자 하나 남성이 실제 구직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며, 유치원 교사 교육을 받는 남성은 증가하였으나 그 중 반 정도만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실제 남성 교사의 채용률과 전문가적 자부심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노르웨이 정부

31)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August, 2013), Gender Equality in Kindergartens,(www.regjeringen.no에서 인출)

32) “노르웨이의 양성 평등 정책”. 주노르웨이 한국대사관(www.nor.mofa.go.kr에서 인출)

는 유치원에서의 남녀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유치원 직원 중 남성의 비율을 증진시키는 것이 핵심이라 보고 있으나, 유치원기본계획(Framework Plan for the Kindergarten)에서는 이 뿐 아니라 유치원의 교육 활동에서 전통적인 성별 격차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한 부분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즉, 유치원의 남교사가 남자 아이들과 밖에서 공을 차며, 여교사는 실내에서 여자 아이들과 놀이를 한다면 이는 남성의 비율을 증진시키는 것에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³³⁾.

정부에서는 1997~2000년 계획부터 2000년대 말까지 유치원에서의 남성교직원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나정·장영숙, 2002: 209), 2012년 현재 노르웨이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직원 중 단지 10.6%가 남성이며, 교사 중 6.8%, 보조교사 중 9.5%, 이중 언어 보조교사 중 8.7%에 불과하다. 오히려 사무원과 유급도우미 중 남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표 18〉 노르웨이 유치원의 직무별·성별 교직원수

단위: 명, %

구분	총 교직원수	수석교사	교사	보조교사	이중언어 보조교사	사무원	기타 교직원	기타 유급 도우미
전체(T)	91,239	6,712	25,486	43,792	1,077	1,584	6,413	6,413
여(A)	81,598	6,184	23,742	39,635	983	1,341	6,050	3,663
남(B)	9,641	528	1,744	4,157	94	243	363	2,512
남성교직원 비율(B/T)	10.6	7.9	6.8	9.5	8.7	15.3	5.7	40.7

자료: Statistics Norway(June, 2013). Kindertagens, 2012 final figures. (www.ssb.no에서 인출, 재구성)

33)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August, 2013). Gender Equality in Kindertagens.(www.regjeringen.no에서 인출)

그러나, 노르웨이 유치원에서의 남녀 성비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으로 남성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19〉 노르웨이 유치원의 연도별 남성 교직원 비율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총교직원(T)	81,450	84,884	87,401	88,823	91,239
여성(A)	73,854	76,511	78,379	79,614	81,598
남성(B)	7,596	8,373	9,022	9,209	9,641
남성교직원 비율(B/T)	9.3	9.6	10.3	10.4	10.6

단위: 명, %

자료: Statistics Norway(June, 2013), Kindergartens, 2012 final figures.(www.ssb.no에서 인출, 재구성)

다. 교직원의 자격

노르웨이에서 유치원 교사 양성은 1930년대 스웨덴, 덴마크 또는 독일에서 제공되던 단기 ‘프뢰벨 세미나(Fröbel-Seminar)’에서 민간기관에서의 2년 교육과정에 이르는 프로그램을 통해 양성되기 시작하여 마침내 1980년 학부과정 교육으로 발전하였다(Haug & Storø, 2012). 현재 노르웨이의 유치원 법(the Kindergarten Act)에서는 관리직급(director, head teacher)³⁴⁾과 교사(educational leader, pedagogical leader)³⁵⁾는 유치원 교사 자격이 있거나 아동을 대하여 일할 수 있거나 교육관련 전문 자격증을 부여하는 기타 대학 교육을 이수할 것을 요구한다.

유치원 교사 자격은 3년 과정의 종일제 학사학위 과정 혹은 4년 과정의 시간제 학사학위 과정으로 취득할 수 있다(Haug & Storø, 2012). 교사가 대학에서 유치원 교사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유아 교

34) 법조항에서는 ‘head teacher’ 표기됨(the kindergarten Act, Section 17)

35) 법조항에서는 ‘pedagogical leader’ 표기됨(the kindergarten Act, Section 18)

육에 관한 교육을 기타 고등교육수준의 교육 기관에서의 3년 과정 프로그램으로 이수할 경우 유치원 교사 교육을 받은 것으로 동일시 될 수 있다³⁶⁾.

2012년 기준 노르웨이 유치원의 전체 교직원 중 공인된 유치원 교사 교육을 이수한 비율은 약 31%이며, 핵심 교육 인력 중에서는 관리직급(director, head teacher) 중 92.2%, 교사 중 84.5%만이 공인된 유치원 교사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핵심 교육 인력 중 가장 비중이 크며 전체 교직원 중 48%에 달하는 보조교사 중에서는 단지 1.5%만이 유치원 교사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0〉 노르웨이 유치원의 직무별 · 자격별 교직원수(2012)

단위: 명, %

구분	관리직급 (director)	교사	보조교사	이중언어 보조교사
전체(T)	6,712	25,486	43,792	1,077
공인유아교사 교육 이수(A)	6,087	21,524	664	51
아동을 대하여 일할 수 있는 자격 부여하는 기타 대학교육 이수	425	1,456	835	70
특별 허가 보유	164	3,869	-	-
직업교육 이수	16	757	10,247	50
공인유아교사 교육 이수 비율(A/T)	92.2	84.5	1.5	4.7

자료: Statistics Norway(June, 2013), Kindergartens, 2012 final figures,(www.ssb.no에서 인출, 재구성)

지난 10년간 노르웨이의 유치원 수는 급증하였고, 특히 2009년 1세 이상 아동에 대한 유치원 입학이 법적 권리로 인정되게 된 이후 교사의 부족 문제는 유치원 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로 부상하였다.

36) the kindergarten Act, Section 18

이에 대해 한편으로는 관리직급에 대한 법적으로 요구되는 유치원 교사 교육의 면제가 문제 해결을 위한 한 축이 되었다. 다른 한편 교육 연구부는 교육기관과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2007년 ‘현장 기반 유아교사교육(workplace-based early childhood teacher education)’을 출범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이는 4년의 시간제 학사학위 과정으로 유치원의 보조교사 중 학생을 선발하며 학생은 학사학위 과정을 밟는 중 유치원 현장에서 최소 50% 이상 일하도록 하는 것이다. 유치원 교사를 양성하는 표준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이러한 노력으로 교사 수급 부족이 조금씩 해소되고 있다³⁷⁾.

라. 교직원 관련 규제

유치원법에서는 유치원에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범죄경력증명서(Police certificate)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경력증명서에 의해 이전에 아동성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유치원에서 일할 수 없다.

또한 관할 지자체에서는 현재 유치원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아동성범죄에 대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³⁸⁾.

37) Haug, K.H.& Storø, J.(2012). Kindergarten-a universal right for children in Norway. (www.childresearch.net에서 인출)

38) the Kindergarten Act section 19, Police certificate

6. 질 관리

가. 교사 대 아동 비율

3세 미만 아동 7~9명 당 1명, 3세 이상 아동 14~18명당 1명 이상의 교사가 요구된다³⁹⁾. 이와 함께 유치원에는 충분한 교육적인 활동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교직원(staff)을 갖추어야 한다. 2011년 교직원 1인당 평균 아동 수는 3.8명 이었다⁴⁰⁾.

나. 교사 처우

노르웨이의 교육 단계별 교사들은 비슷한 교육수준의 근로자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임금 수준이 낮다. 2011년 기준 유치원 교사의 임금은 고등교육을 받은 종일제 근무 근로자들의 근로소득 대비 61% 수준이며, 이는 초등·중등 교사의 임금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OECD 국가 유치원 교사의 평균 임금 수준이 고등교육을 받은 종일제 근로자 대비 80% 수준이며, EU 국가 유치원 교사가 77% 수준인데 비하여도 매우 낮아, 비교대상 22개국 중 17번째의 순위에 해당한다.

반면 공립 유치원 교사의 연간 수업시수(teaching time)는 2011년 평균 1,508시간으로 OECD 유치원 교사 평균(994 시간), EU 국가 유치원 교사 평균(977시간)에 비해 50%이상 많아 비교대상 29개국 중 3번째에 해당한다.

39)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y.(www.regjeringen.no에서 인출)

40) Norwegian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October, 2012),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Norway, FactSheet.

많은 국가에서 유치원 교사의 수업시간이 초등·중등 교사의 수업 시간 보다 길지만, 노르웨이는 그중에서도 초·중등교사에 비해 현저히 긴 시간 수업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1〉 교사의 임금수준과 수업시간(2011)

구분	노르웨이	OECD 평균	EU21 평균	순위*
고등교육 이수한 전시간 근로자 임금 대비 비율(%)				
유치원 교사	61	80	77	17위
초등학교 교사	70	82	80	18위
중학교(lower secondary) 교사	70	85	84	19위
고등학교(upper secondary) 교사	75	89	89	19위
연간 수업시간(시간)				
유치원 교사	1,508	994	977	3위
초등학교 교사	741	790	777	20위
중학교 교사	663	709	669	14위
고등학교 교사	523	664	651	26위

주: * OECD 국가 및 G20국가 중 순위임.

자료: OECD(2013), Education at a glance 2013-country notes and key fact tables 재구성

다. 유치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력

2009년 노르웨이 정부는 아동의 발달과 인종, 문화, 언어 등 사회적 배경이 다른 아동들간 통합과 동등한 기회 제공을 통한 형평성 제고를 위해 1~5세 아동이 유치원에 다니는 것을 법정 권리로 지정하였다⁴¹⁾.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유치원 이용이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 현재 1~5세아 중 90.1%가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고, 교사 등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수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유치원 이용이수와 교직원

41) "유치원은 전액 지원", 주한노르웨이 대사관 홈페이지(<http://www.norway.or.kr>)에서 인출

의 급격한 증가는 또한 유치원의 질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켰다.

이처럼 노르웨이에서는 유치원의 양적 측면(유치원 수)와 함께 질적 측면(내용과 과업)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왔다. 의회의 2008~2009년 백서(No. 41, 2008~2009)에서는 유치원의 질에 대해 전적인 관심을 표명하였고, 2012~2013년 백서(No. 24, 2012~2013)에서도 미래의 유치원에 대한 정부의 의무를 논의함으로써 질에 대한 관심이 견지되고 있다(Haug & Storø, 2012).

정부의 이러한 관심과 노력의 주요한 목적은 모든 유치원에서 평등(equality)과 높은 수준의 질(high quality)을 획득하는데 있다(Haug & Storø, 2012).

이는 많은 연구에서 유치원을 이용하였던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학업과 직업에 있어 더 나은 기회를 얻게 된다는, 즉 생애초기의 투자가 가장 가치 있고 효과가 크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를 통해 모든 아동은 질적 수준이 높은 유치원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Norwegian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2009)⁴²⁾.

즉, 정부는 모든 아동에게 유익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유치원의 발전을 이끌었으며, 이는 유치원이 아동의 가정환경이나 인종,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아동 모두에게 유사한 생활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Haug & Storø, 2012).

2008~2009년의 ‘유치원 관리에 대한 백서’에 의하면 노르웨이 정부는 ECEC의 서비스 질 증진에 대해 다음의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였다.

42) Norwegian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2009). The most important messages in White Paper No.41(2008-2009) Quality in ECEC

〈표 22〉 ECEC 서비스 질 증진을 위한 목표

모든 유치원에서의 형평성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보장할 것
(Ensure equity and high quality in all kindergartens)
 배움과 발달의 장으로서의 유치원을 강화할 것
(Strengthen the kindergarten as and arena for learning and development)
 모든 아동에게 안전하고 통합적인 유치원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기회를 보장할 것
(Make sure that all children have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actively in a safe and inclusive kindergarten environment)

주: * OECD 국가 및 G20국가 중 순위임.

자료: OECD(2013), Education at a glance 2013-country notes and key fact tables

유치원의 질 향상을 위한 각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르웨이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3〉 모든 유치원에서의 형평성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보장할 것

내용	계획
교직원 질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교사 교육을 받은 교직원 수 확대 - 유치원 교사 교육 장소(자격 취득 교육, 보수 교육 포함) 확대 - 신규 임용 유치원 교사에 수퍼비전 제공 - 기타 전문직을 교직원으로 포함 - '학년기전단계 교사(preschool teacher)' 를 '유치원 교사(kindergarten teacher)' 로 명칭 변경
가정과의 협력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 부모 자문위원회(national advisory board) 도입 (유치원 정책에 부모 의견 제시) - 모든 유치원에 부모별 연 2회의 개별 상담 의무화
유치원에 대한 지식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의 질적 수준을 관리·감독할 국가 시스템 개발 - 유치원 실태에 대한 국가 수준 연차 보고서 편찬 - 교사 교육 부문 장학생을 대상으로 국립 연구원 양성소 설립 - 유치원 이용의 질과 장기적 효과에 관한 중단 연구 지원 - 유치원에 관한 web portal 구축
책임 분담과 유치원 감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실태에 맞는 법 개정 - 관리체계 평가 강화 - 공사립유치원간 서비스 격차 방지를 위한 동등한 관리

자료: Norwegian Ministry of Education(2009), The most important messages in White Paper No.41(2008~2009) Quality in ECEC, 내용 재구성

먼저, 모든 유치원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동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교직원 질 향상, 가정과의 협력 증진, 유치원에 대한 지식 증진, 책임 분담과 유치원 감독 강화라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중 교직원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위해 전문자격을 갖춘 교직원 수 증진, 수퍼비전 제공 등을 계획으로 제시하였으며, 무엇보다 유치원 교사를 ‘학년기전단계 교사(preschool teacher)’가 아닌 ‘유치원 교사(kindergarten teacher)’로 명칭 변경함으로써 유치원이 단지 학교의 전단계가 아닌 1~5세 아동을 위한 독립적이며 중요한 기관임을 분명히 하였다.

〈표 24〉 배움과 발달의 장으로서의 유치원을 강화할 것

내용	계획
활동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의 활동 내용과 과업을 위한 유치원 기본 계획 (Framework Plan for the Kindergarten)안에서 학습 영역을 위한 목표가 유익한지 여부를 고려함 - 양성 평등 관련 유치원 활동이 일신되고 강화될 방법을 고려함 - 언어발달과 사미(sami)족 전통 발달을 위한 정부 재정 지원에 합의
서류와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유치원을 대상으로 유치원에서 기록한 아동의 흥미, 놀이, 학습과 발달에 대한 서류를 학교로 전달하게 하는 법적 규제 도입

자료: Norwegian Ministry of Education(2009), The most important messages in White Paper No41(2008-2009) Quality in ECEC. 내용 재구성

유치원을 배움과 발달의 장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활동내용과 서류·평가 작업에서의 개선을 계획하였다. 유치원의 활동 내용 면에서는 학습 영역의 목표가 유익한지를 고려하며, 양성 평등이 유치원의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전달되고 소수민족 등 다양한 배경의 아동간의 통합과 고른 발달을 위한 지원을 하기 위한 계획이 마련되었다. 모든 아동이 유치원에서 동등한 활동기회 및 이를 통한 발달 기회를 갖

도록 능력, 가족배경에 관계없는 참여 기회가 제공되도록 하며 모든 원아에 대한 언어능력 선별검사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계획되었다. 또한 아동학대 피해 아동 등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 아동복지 서비스와의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교사 교육을 강화하고 감독 자료를 개발할 것이 계획되었다.

〈표 25〉 모든 아동에게 안전하고 통합적인 유치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보장할 것

내용	계획
동등한 활동과 발달 기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능력, 가족배경에 관계없는 동등한 기회 제공 - 모든 유치원 원아에 대한 교육적 지원에 관한 공공위원회 설립 - 모든 유치원 원아에 대한 언어능력 선별검사 제공을 법제화 - 언어 선별검사 도구에 대한 감독 자료 개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과 아동복지 서비스의 협력을 위한 감독 자료 개발 - 폭력과 유기에 대한 유치원 교사 교육 강화

자료: Norwegian Ministry of Education(2009). The most important messages in White Paper No41(2008-2009) Quality in ECEC. 내용 재구성

노르웨이의 육아휴직제도

노르웨이 여성은 어머니로서의 삶의 질과 사회활동 참여율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편이며, 이는 양성 평등을 위한 노력과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와 같은 국가정책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노르웨이 여성의 경제활동 및 정치 참여의 특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주요한 일·가정 양립 지원의 하나인 ‘육아휴직제도’를 살펴보도록 한다.

1. 배경: 여성의 경제정치활동 현황

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2012년 현재 노르웨이의 15~64세 여성취업률은 73.8%로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같은 북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아이슬란드 다음으로 높다.

일반적으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곡선은 M자 형태

〈표 26〉 OECD 주요 회원국의 (15~64세) 여성 취업률

단위: %

호주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66.6	69.2	70	68.2	60	68	41.9	52.1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78.5	55.2	47.8	60.7	53.5	59	70.4	67
노르웨이	폴란드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 평균
73.8	53.1	71.8	73.6	28.7	65.7	62.2	57.2

주: 아래 자료를 축소 편집함.

자료: Labour market statistics: Labourforce statistics by sex and age: indicators, OECD Employment and LabourMarket Statistics(database)

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에 들어 임신과 출산 및 양육 부담으로 인해 여성의 경제활동이 단절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표 27〉에서 노르웨이 여성의 연령별 집단의 노동시장 참여 인구와 비율을 보면 25~29, 30~39, 40~49세의 연령대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각 연령집단 총 인구의 80% 이상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림 3]을 보면 노르웨이의 여성취업률 곡선은 일반적인 M자 형태가 아닌 거꾸로된 U곡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1980년과 비교해 볼 때, 1980년에는 완만한 함몰이기는 하나 거꾸로된 U곡선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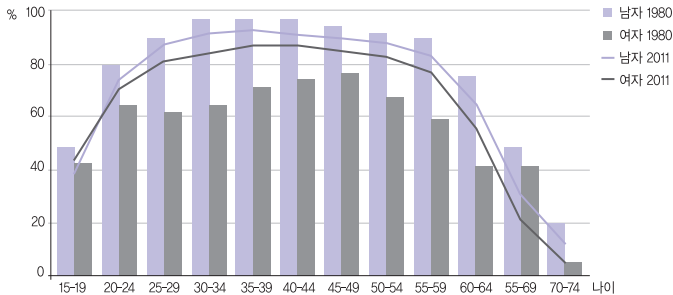
〈표 27〉 연령별 노동시장 참여수와 비율(2012년도)

단위: 천명, %

구분	남성		여성		
	수	비율	수	비율	
전체(15~74세)	1,419	74.4	전체(15~74세)	1,259	68.5
15~19세	66	39.7	15~19세	72	45.2
20~24세	127	73.9	20~24세	115	70.7
25~29세	144	86.4	25~29세	129	80.9
30~39세	320	91.2	30~39세	278	84.6
40~54세	485	89.6	40~54세	435	84.7
55~66세	252	70.2	55~66세	216	61.0
67~74세	23	15.3	67~74세	14	8.7

주: 아래 자료에서 재정리

자료: Labour force surveys, Statistics Norway, Persons in the labour force aged 15-74, by age and sex (LFS), 1 000, Persons in the labour force aged 15-74, by age and sex (LFS), As per cent of all in each group



자료: Labour force surveys, Statistics Norway.

[그림 3] 연령별 노동시장 참가율

기 보다는 M자 형태에 가까웠음을 알 수 있다. 즉, 노르웨이도 지난 수십년 간 여성의 경제·사회활동의 지속성이 개선되어 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지난 50여년간 거의 모든 OECD 국가들에서는 여성 경제 참여에 대해 매우 큰 변화가 일어났고, 노르웨이도 그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이다. 여성의 경제 참여에 대한 성공을 이루기 위한 이면에는 출산률의 제고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노르웨이를 비롯한 노르딕 국가들에서는 일과 가정의 삶을 결합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수행하여 왔다. 1950년대와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노르웨이에서는 전업주부의 상이 지배적이었고, 노르웨이에서 중산층 이상의 주된 이데올로기는 여성의 원래 타고난 역할을 보다 강조하는 것이어서(한경현, 2010) 여성의 경제참여율은 낮았다.

이에 1960년의 15~64세 여성 경제 참여율은 26.1%였으나,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재정립함에 따라 1970년대 초 이후로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상승하기 시작하여 1980년에 58.4%로 2000년에는 72.1%로 상승하기에 이르렀고(OECD, 2000; Pissarides, C et al., 2003

에서 재인용)⁴³⁾,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어머니들의 83%가 경제활동에 참여하였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의 증가와 함께 출산율도 함께 올라 1980년에 1.72였던 합계출산율은 2012년 현재 1.85로 유럽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2013년 현재 노르웨이의 재무부 장관인 Sigbjørn Johnsen은 노르웨이에서 여성의 경제 참여율과 출산율이 상승한 데에는 두 가지 배경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첫째로는, 노르웨이에서의 여성 취업은 노동에 대한 수요가 있었을 때 비약적으로 동시에 증가한 것이고, 동시에 여성들 사이에 주목할 만한 교육적 성취의 신장이 있었다. 두 번째로는 보편적인 부모 육아휴직과 아동의 기관 이용이다. 1970년에는 오직 13,000명의 아동이 데이케어 센터를 이용하였으나, 현재 모든 1~5세 아동의 거의 90%인 280,000여명이 기관을 이용한다. 근로중인 어머니와 아버지를 위한 육아 휴직은 공적 예산으로부터 지출되며, 30년 전 12주로부터 오늘날 47주로 확장되었다. 또한 아동이 12세까지 아픈 자녀를 위해 유급재택근무를 하거나 시간제로 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명문화되었다(Johnsen, S., 2012).

노르웨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정도와 수준이 비단 양적인 면에서뿐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뛰어나다. 그 예로 세계적인 기업 평가 기관인 GMI ratings가 전세계 45개국 5,977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수행한 조사에 의하면 노르웨이의 여성임원비율이 36.1%(2013년 현재) 세계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은 1.9%인 것으로 나타나, 한국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자체가 높지 않을뿐더러 참여가 이

43) 2000년의 노르웨이 남성 경제 참여율은 88.1%임.

루어진다고 하여도 비전문직이거나 하위직이 많지만, 노르웨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전문직과 고위직과 같은 질 높은 자리에 포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8〉 주요국의 여성 임원 비율

단위: %

국가	2013. 1	2011. 4	2010. 4	2009.4	2009. 4~2013. 1 증감
호주	14.0	13.8	10.2	8.4	5.6
일본	1.1	1.1	0.9	0.9	0.2
대한민국	1.9	1.9	1.7	1.5	0.4
중국	8.4	8.5	8.0	7.9	0.5
대만	4.4	5.8	5.9	6.4	-2.0
프랑스	18.3	16.6	12.7	9.0	9.3
독일	14.1	12.9	10.7	10.5	3.6
이탈리아	8.2	4.5	3.6	3.6	4.6
영국	12.6	10.7	8.9	8.5	4.1
헝가리	4.5	5.9	6.1	9.7	-5.1
러시아	4.8	4.6	5.5	5.3	-0.5
이스라엘	15.7	14.2	14.0	13.5	2.2
노르웨이	36.1	36.3	34.8	35.7	0.4
스웨덴	27.0	26.4	27.5	23.8	3.2
멕시코	5.8	6.4	6.9	6.1	-0.3
미국	-	12.6	12.3	12.1	-

자료: GMI RATINGS(2013), GMI Ratings' 2013 Women on Boards Survey.

나. 여성의 정치 참여와 법제

노르웨이는 사회민주주의 전통에 근거하여 양성평등 신장을 실천해 온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따라서 노르웨이 정부의 현재 ‘관대한’ 가족정책이 단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양성평등 사회를 더욱 확고하게 실현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⁴⁴⁾.

이러한 노르웨이의 양성평등은 정부 주도의 정책변화로 이루어진

44) nor.mofa.go.kr

것으로서, 1913년 여성에게 투표권을 처음으로 부여하였고, 1978년에는 '양성간의 평등지위에 관한 법률(The Act relating to Gender Equality (the Gender Equality Act))을 제정하여 한 쪽 성의 비율이 40% 이하가 되는 것을 금지하였다. 그 결과 1957년에는 150명의 노르웨이 의회 의원 중 여성이 10명에 불과했지만 2009년에는 169명 중 67명이 여성으로 대대적인 증가가 이루어졌다(표 29 참조). 또한 2003년 이사회와 양성 대표제(Representation of both sexes on company boards)의 개정을 통해 600여개 이상 공기업과 상장기업이 이사진의 40%를 여성에게 할당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권고는 2006년 의무사항으로 강화되어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법원 명령에 의한 기업해산이나 벌금형도 가능하다⁴⁵⁾.

〈표 29〉 성별 국회의원 수

	단위: 명							
연도	1957	1965	1973	1981	1985	2001	2005	2009
남성	140	138	131	115	103	105	105	102
여성	10	12	24	40	54	60	64	67

자료: Statistisk sentralbyrå - Statistics Norway(2012), Statistical Yearbook of Norway 2012: Storting elections, Representatives, by party/electoral list and sex

노르웨이에서는 2008년부터 양성평등 지표(Indicators for gender equality)를 발표하고 있다. 2011년 양성평등 지표에 따르면, 지방자치위원회에서의 여성의 비율은 38.2%이며, 공공 영역에서의 여성 고용인(20~66세) 비율은 70.6%이고, 민간 영역에서의 여성 고용인(20~66세) 비율은 36.8%이다.

45) 한국일보, 2010. 11. 3, www.regjeringen.no, 2013. 9. 5. 인출

〈표 30〉 양성평등 지표

단위: %, NOK

구분	2010	2011
1~5세 아동의 유치원 이용 비율	89.3	89.7
지방자치위원회에서 여성의 비율	38.2	38.2
고등 교육 학력의 남성 비율	24.0	25.6
고등 교육 학력의 여성 비율	28.4	30.7
노동 시장에서의 남성(20~66세) 비율	83.1	82.5
노동 시장에서의 여성(20~66세) 비율	76.7	76.7
남성 평균 소득(NOK)	433,200	453,300
여성 평균 소득(NOK)	285,600	299,900
시간제 근무직의 남성(20~66세) 비율	15.1	13.8
시간제 근무직의 여성(20~66세) 비율	36.4	35.5
부성 할당을 전부 혹은 연장하여 이용하는 아버지의 비율	..	64.6
성 균형 사업체의 수준(점수)	0.61	0.60
공공 영역에서의 여성 근로자(20~66세) 비율	70.7	70.6
민간 영역에서의 여성 근로자(20~66세) 비율	36.9	36.8
리더 중 여성(20~66세) 의 비율	33.9	..
중등학교 이상 교육 프로그램에서의 성 균형 수준 점수	0.66	0.66

자료: Indicators for gender equality, Source data, The whole country, Statistics Norway(www.ssb.no에서 인출)

2. 개요⁴⁶⁾

가. 연혁

노르웨이에서는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급여를 보전 받으며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노르웨이의 육아휴직제도는 부모들이 일과 가정 사이의 조화 및 양립을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기여하는 비중을 늘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버지에게

46) The Norwegian Labour and Welfare Administration(www.nav.no)에서 발췌 및 정리

도 육아 휴직 사용이 허용된 점은 우리나라와 같다고 볼 수 있으나, 여기에서 더 나아가 아버지의 의무 육아휴직제도(부성할당)를 세계 최초로 도입하였다.

노르웨이의 육아휴직제도가 처음부터 획기적인 가족정책이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1993년 전까지의 노르웨이 가족정책은 다른 노르딕 국가에 비해 매우 한정적이고 더딘 발전을 보여 왔다. 노르웨이의 출산·육아관련 휴가·휴직제도는 1956년 출산 전 6주, 출산 후 3개월 총 18주의 유급 출산휴가정책의 도입으로 시작되었다(한경헌, 2010). 1977년에는 총 육아휴직 기간이 18주였으며, 그로부터 10년 후에 2주가 확대되었고, 그 이듬해에는 22주로 확대되었다. 1989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을 급여 보상 비율에 따라 24주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 전액을 보전 받거나 30주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의 80%를 보전 받을 수 있게 되어, 기간에 대한 부모의 선택을 존중하게 되었다.

육아휴직 기간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3년 현재 총 육아휴직기간은 급여를 100% 보전받을 시 49주, 80% 보전받을 시 59주에 이른다. 육아휴직 도입 당시부터 부부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아버지의 육아휴직 기회 활용 비율은 매우 낮았다. 그러나 1993년에 자녀 육아에 대한 아버지의 책임과 권리를 증진시키는 차원에서 부성할당제가 도입되게 되었고, 총 육아휴직기간 중 부성할당은 1993년 부성할당 도입 당시 총 42(52)주의 육아휴직 기간 중 4주, 2005년에는 43(53)주 중 5주, 2006년에는 44(54)주 중 6주, 2009년에는 46(56)주 중 10주, 2011년에는 47(57)주 중 12주로 점차

연장되어 최근 2013년 7월 개정시 14주로 변경되며 부성할당 역시 모성할당과 마찬가지로 14주가 되었다. 최근 2013년 7월 1일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임금의 100%를 받으며 49주를 사용하여거나 임금의 80%를 받으며 59주를 사용할 수 있다(입양한 경우에는 3주가 축소됨).

〈표 31〉 노르웨이 육아휴직 개정 연혁

일자	총 육아휴직 기간	급여 보전 비율	부성할당
1977. 7. 1	18주	100%	-
1987. 5. 1	20주	100%	-
1988. 7. 1.	22주	100%	-
1989. 4. 1	24(30)주	100(80)%	-
1990. 5. 1	28(35)주	100(80)%	-
1991. 7. 1.	32(40)주	100(80)%	-
1992. 4. 1.	35(44.4)주	100(80)%	-
1993. 4. 1.	42(52)주	100(80)%	4주
2005. 7. 1.	43(53)주	100(80)%	5주
2006. 7. 1.	44(54)주	100(80)%	6주
2009. 7. 1.	46(56)주	100(80)%	10주
2011. 7. 1.	47(57)주	100(80)%	12주
2013. 7. 1.	49(59)주	100(80)%	14주

자료: www.nav.no/rettskildene/Rundskriv/183541.cms, Cools et al., 2011, p36에서 재인용 · 보완함.

나. 담당부처

육아휴직은 노르웨이 노동·복지청(the Norwegian Labour and Welfare Administration, NAV)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아동·평등·사회통합부(The Ministry of Children, Equality and Social Inclusion)의 5개 과 중 가족·평등과(Department of Family Affairs and Equality) 산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2006년 1월 설립되었다. NAV

는 육아휴직과 같은 돌봄을 위한 복지제도 외에도 실업 급여, 업무 평가 수당, 질병 급여, 연금과 같은 제도를 관리하는 기관이다. 이러한 제도는 ‘플케트리그든(Floketrygden)’ 이라고 불리는 국민보험(the National Insurance Scheme)의 멤버십으로 운영되는데, 노르웨이 국민들은 국민 보험법(the National Insurance Act)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국민보험의 보험료는 2011년 기준 개인소득의 7.8%이며 자영업자는 11%, 연금의 경우는 4.7%이다.

다. 기간과 급여 수준

최근 개정에서는 육아휴직을 세 부분(공동 기간, 모성할당 기간, 부성할당 기간)으로 나누고 있다. 이는 가족의 삶에 있어서 선택에 대한 의식을 더 크게 고취시키고, 모성할당 기간과 부성할당 기간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아버지로 하여금 육아휴직에서의 더 큰 몫을 담당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2013년 7월 개정에 따라, 최대 육아휴직 급여 기간은 49주이며 이 기간 동안에는 급여의 100%를 보전 받을 수 있다. 또한 급여의 80%

(표 32) 육아휴직 기간 구분

구분	2013. 7. 1. 출생(입양) 이후
출생 전	3주
공동 기간(부모가 협의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기간)	18주(100% 급여의 경우) 28주(80% 급여의 경우)
모성할당	14주
부성할당	14주
최대 급여 기간	49주(100% 급여의 경우) 59주(80% 급여의 경우)

자료: The Norwegian Labour and Welfare Administration(www.nav.no에서 인출)

를 보전 받으면서 육아휴직기간을 10주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1) 공동 기간(shared period)

총 육아휴직기간에서 모성할당 기간과 부성할당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18주(100% 급여의 경우), 혹은 28주(80% 급여의 경우)이다. 이는 부모들의 협의에 따라서 육아휴직기간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간으로, 예를 들어 아버지가 공동 기간의 일부 혹은 전부를 사용할 경우, 어머니는 이 기간 중 반드시 유급 근로에 임하거나 이에 상당한 활동을 하여야 한다.

2) 모성할당(Maternal quota)

모성할당은 어머니만이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기간으로서, 어머니에게 할당된 육아휴직은 14주이다. 자녀 출산의 경우에는, 출산 후에는 바로 6주를 사용해야 하며, 나머지 8주는 육아휴직 기간 중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다. 단, 근로·교육 중에 있거나, 어머니가 질환이 있어서 자녀를 돌보는 데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 등일 때는 아버지가 이 기간(모성할당)을 청구할 수도 있다.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는 휴직 전 임신 10개월 동안 최소한 6개월 동안 근무하였어야 하고, 소득이 국가보험제도(National Insurance Scheme)의 연간 기본 급여액의 50% 이상 이어야 한다.

3) 부성할당(Paternal quota)

부성할당은 아버지만이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기간으로서, 아버지에게 할당된 육아 휴직은 14주이다. 부성할당의 목적은 자녀를 돌

보는데 있어 아버지들의 참여를 독려하는데 있으며, 아버지가 부성 할당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 기간은 소멸된다. 부성할당기간동안 자녀의 어머니는 근로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활동을 할 필요는 없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부성할당 기간에 부모는 최대 육아휴직급여의 150%를 수령할 수 있으나, 이때에는 어머니가 적어도 50%의 근로를 할 때에만 적용된다.

만일 어머니에게 단독 친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 아버지가 육아 휴직급여의 조건이 되지 않는 경우, 아버지가 질환이 있어서 자녀를 돌보는데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부성 할당이 주어지지 않는다. 자녀를 출산한 직후 6주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기간동안 언제라도 부성할당을 사용할 수 있다.

모성할당과 부성할당은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14주를 연이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7주 동안 주당 4일씩 일하며 하루씩 부성할당을 사용할 수도 있고, 140일 동안 일을 50%만 하는 경우 등도 가능하다. 그러나 자녀가 3세가 되기 전까지만 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입양한 경우에는 입양 후 3년 이내여야 한다. 배우자 중 한 쪽이 할당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상대방은 유급 근로를 해도 좋고 아니어도 상관없다.

3. 이용 현황

가. 일반 현황

노르웨이에서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여성수는 대체로 증가하고 있

는 추세이다. 다음의 <표 33>를 보면 2005년에는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전체 여성수는 69,695명이었고, 2006년 70,000명을 넘어 2011년 78,534명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최근 2년간인 2011년과 2012년은 은 그 수가 다소 줄었으나 이는 1.9명이던 출산율이 2011년 들어 1.8명으로 감소한 결과이다⁴⁷⁾.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육아휴직자는 급여의 100%를 받으며 49주를 휴직하거나 급여의 80%를 받으며 기간을 연장하여 최대 59주까지 휴

<표 33> 육아휴직 이용 연령별 여성 수(2005~2013년)

단위: 명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체	69,695	70,407	72,131	72,719	76,250	77,396	78,526	77,534	74,530
25세 미만	5,329	5,339	5,855	6,415	7,000	7,135	6,952	6,630	6,025
25~29세	19,129	19,127	19,670	19,734	21,056	21,285	21,642	21,554	21,015
30~34세	28,259	28,152	27,758	27,123	27,740	28,018	28,702	28,553	27,728
35~39세	14,143	14,805	15,654	15,887	16,589	16,908	16,958	16,472	15,475
40세 이상	2,835	2,984	3,194	3,560	3,865	4,050	4,272	4,325	4,287
80% 급여시	53,456	53,888	53,393	51,733	51,120	45,985	40,267	33,847	31,877
25세 미만	3,411	3,321	3,475	3,676	3,837	3,563	3,051	2,623	2,378
25~29세	14,272	14,179	14,127	13,554	13,708	12,287	10,686	9,115	8,780
30~34세	22,529	22,355	21,418	20,098	19,101	16,982	14,803	12,286	11,637
35~39세	11,138	11,788	12,022	11,870	11,768	10,656	9,339	7,759	7,094
40세 이상	2,106	2,245	2,351	2,535	2,706	2,497	2,388	2,064	1,988
100% 급여시	16,239	16,519	18,738	20,986	25,130	31,411	38,259	43,687	42,653
25세 미만	1,918	2,018	2,380	2,739	3,163	3,572	3,901	4,007	3,647
25~29세	4,857	4,948	5,543	6,180	7,348	8,998	10,956	12,439	12,235
30~34세	5,730	5,797	6,340	7,025	8,639	11,036	13,899	16,267	16,091
35~39세	3,005	3,017	3,632	4,017	4,821	6,252	7,619	8,713	8,381
40세 이상	729	739	843	1,025	1,159	1,553	1,884	2,261	2,299

자료: Kvinner med foreldrepenger i løpet av 1.-3. kvartal 2004-2013, Dekningsgrad, Alder, Antal(www.nav.no)

47) 노르웨이 출산율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⁴⁸⁾
출산율	1.84	1.90	1.90	1.96	1.98	1.95	1.88	1.85

주: 2012년 자료는 Wikipedia(http://en.wikipedia.org/wiki/Demographics_of_Norway)의 자료임.

자료: Statistisk sentralbyrå · Statistics Norway(2012), Statistical Yearbook of Norway 2012.

직 중 선택할 수 있는데, 2005년에는 80% 급여를 받는 수가 53,456명(76.7%), 100% 급여자가 16,239명(24.1%)로 3배 이상 많았지만, 2012년과 2013년에는 100% 급여 수령자가 더 많아졌다. 2013년에는 80% 급여 수령자는 31,877(42.8%), 100% 급여 수령자는 42,653(57.2%)이다.

나.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

자녀 양육에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 강화를 위한 노력에 힘입어, 1990년대 초 단 2~3%의 아버지들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에 비해, 2008년에는 약 90%의 아버지들이 할당된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으며, 2000년에는 할당된 10주의 육아휴직 기간을 넘겨 연장시킨 아버지가 11%였으나, 2008년에는 16.7%로 증가하였다⁴⁸⁾.

〈표 34〉는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남성 수로서, 2005년 29,636명부터 2013년 50,765명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육아휴직 이용 남성의 수는 비교적 소폭 증가하다가 2010~2012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부성할당이 2009년 10주로, 2011년 12주로 늘어난 것과 관련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앞의 표에서 육아휴직자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연령대는 여성의 경우 25~34세였던 것에 비해, 남성의 경우는 30~39세에 육아휴직자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표 34 참조).

48) www.norway.or.kr에서 인출

〈표 34〉 육아휴직 이용 연령별 남성 수(2005~2013년)

단위: 명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전체	29,636	30,422	32,295	33,813	36,629	39,528	46,454	50,051	50,765
25세 미만	570	559	708	799	940	885	1,148	1,160	1,105
25~29세	4,628	4,691	5,219	5,508	5,908	6,332	7,323	7,892	8,022
30~34세	11,519	11,637	11,805	11,903	12,535	13,479	15,890	16,812	17,145
35~39세	8,746	9,197	9,733	10,260	11,170	11,940	13,796	14,608	14,823
40~44세	3,095	3,212	3,581	3,961	4,468	5,125	6,105	6,927	6,967
45~49세	814	824	916	1,013	1,184	1,296	1,636	2,029	2,021
50세 이상	264	302	333	369	424	471	556	623	68

자료: Menn med foreldrepenger i kjøpet av 1.-3. kvartal 2004-2013, Alder, Antall(www.nav.no)

또한 아래 〈표 35〉에서 1998년부터의 노르웨이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일수를 살펴보면, 1998년부터 2006년 이전까지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중 6~70%가 20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2005년

〈표 35〉 노르웨이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일수(1998~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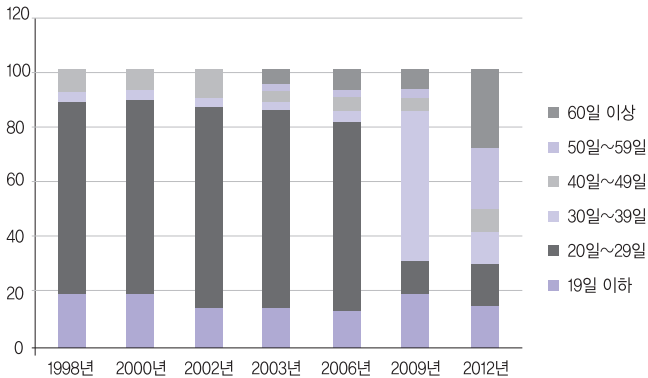
단위: %

구분	1998년	2000년	2002년	2003년	2006년	2009년	2012년
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10일	9.5	10.2	8.3	7.7	6.9	9.6	7.9
11-19일	9.3	9.8	5.9	6.5	6.1	9.5	7.7
20일	68.5	68.9	70.7	69.1	24.0	4.2	3.7
21-24일	0.8	0.6	0.9	1.1	2.4	3.1	4.2
25일	0.4	0.4	0.4	0.4	41.0	2.3	3.4
26-29일	0.5	0.4	0.6	0.9	0.9	2.6	3.6
30일	0.7	0.6	0.6	0.7	1.0	52.3	3.0
31-39일	1.3	1.3	1.6	2.1	2.9	2.8	7.7
40일 이상 (40-49일)	9.0	7.8	11.0	4.0	4.5	3.7	9.4
50일	-	-	-	0.2	1.3	0.7	17.0
51-59일	-	-	-	1.3	1.5	1.9	4.6
60일	-	-	-	0.3	0.4	0.5	20.5
61일 이상	-	-	-	5.6	7.1	6.8	7.3

자료: 1) Menn med foreldrepenger i løpet av året, fordelt på dager, 1997-2006, Prosent(www.nav.no에서 인출)

2) Menn med foreldrepenger i løpet av året, fordelt på dager, 2003-2012, Prosent(http://www.nav.no에서 인출)

7월에 부성할당 기간이 5주로 개정되면서 2006년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의 65%가 20~25일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일수는 점차 증가추세를 보여, 2006년 부성할당 기간이 6주로 늘어남에 따라 2009년에는 25일~30일 사용자가 가장 많다. 또한 2009년 부성할당 기간이 10주로 늘어나면서, 2012년에는 60일을 사용한 아버지도 약 20%나 된다.



자료: 1) Menn med foreldrepenget i løpet av året, fordelt på dager, 1997-2006, Prosent(www.nav.no)에서 일부 발췌 · 재구성, 2013, 8, 30, 인출.

2) Menn med foreldrepenget i løpet av året, fordelt på dager, 2003-2012, Prosent(<http://www.nav.no>)에서 일부 발췌 · 재구성, 2013, 8, 30, 인출.

[그림 4] 노르웨이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일수(1998~2012년)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노르웨이의 육아정책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북유럽 복지국가에 대한 우리의 환상을 어느 정도 깨면서도 육아정책의 방향이 어떠한 방향이어야 할지에 대해 충분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특징을 보였다. 또한 노르웨이는 북유럽 복지국가에 속하면서도 스웨덴이나 덴마크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고 오히려 우리나라와 유사한 면이 많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부정적인 면에서 참고할 부분이 많은 국가임을 알 수 있었다.

ECEC 제도와 정책에서 양대 대상 축이라 할 수 있을 ‘육아지원 기관’과 ‘가정’이라는 측면에서 노르웨이는 기관 이용을 통한 일·가정 양립과 부모 양측의 양육 참여를 실질적으로 가능케 하는 제도적 지원을 모두 발전시킨 국가이다. 양성평등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발전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 모

두의 양육 참여를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로 보장하기 위한 육아휴직 제도로 1세 미만 자녀의 양육을 보장하고 있고, 1세 이상 아동에 대해서는 기관을 통해 가정의 일-가정 양립과 아동의 균형 있는 발달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다. 즉, 미취학 아동을 위한 육아지원 정책과 제도는 기관 혹은 가정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가정과 기관의 역할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발전해 왔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현재 기관을 통한 ECEC 제도는 1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가정 중심의 육아지원 제도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의 발전 단계에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육아휴직 제도를 발전시킴으로써 남녀 간 균형 잡힌 양육 참여를 보장하고 있고 이로 인해 1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의 일-가정 양립 지원 측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지만, 육아지원기관 측면에서의 발전 수준은 발전 도상에 있으며 우리나라와 유사한 문제점도 안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참고할 부분이 많다 하겠다.

우선 스웨덴이나 덴마크에 비해 공립 기관의 비율이 낮은 편이다. 사립유치원의 인가를 통해 육아지원기관을 양적으로 확충한 역사에 우리나라와 유사성이 있으며, 사립기관에의 의존도가 크므로 공사립에 관계없는 공공재정 투입,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기관 간 질적 수준의 차이를 줄이고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 유사성이 있다. 또한 기관 이용과 가정 내 보육에 대한 부모 선택권을 존중하여 ‘양육 수당(Cash for care)’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도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이러한 역사와 함께 안고 있는 문제도 유사하다. 교사의 질적 수준과 처우의 문제가 존재하며 양적 확충을 통해 유치원 이용 비율이 급격히 증가한 후 유치원의 서비스 질 향상의 요구가 높다는 점, 유럽에서도 가장 이민자 비율이 높은 국가로 다문화 가정의 사회적 통합 문제가 중요 이슈인 점도 우리나라의 육아정책이 당면한 문제와 유사하다.

이처럼 유사 상황에서 노르웨이가 ‘현장 기반 유아교사교육’을 통해 교사 수급 간극을 조금씩 좁혀가고 있고, 국가 수준의 계획을 통해 유치원의 프로그램 내용과 과업에 관해 ECEC가 지향하는 목표와 철학을 제시하고 있음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유치원의 활동 내용을 결정하는 교육과정에 아동과 놀이를 중심으로 두고 연령에 맞는 내용을 강화하며, 부모의 의견을 반영하고 다양한 문화와 종교에 대한 상호 이해와 관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시도는 2012년 유보 공통과정인 ‘누리과정’을 도입하여 3~4세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특히, 유치원 이용 아동의 연령이 확대되어 이용아동 수가 급증한 이래, 이용 기관의 양적 확대만이 아니라 유치원을 모든 아동의 발달과 다면화된 사회의 통합을 위한 시작점이라는 인식 하에 접근성, 비용, 언어, 문화 등 유치원 이용 기회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다양한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은 주목하여야 할 부분이다.

무엇보다 노르웨이는 아동을 정책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 보고 있다. 즉, 아동 중심적인 시각에서 유치원을 평생 교육을 시작하는 장이며 “노르웨이 사람의 행복한 어린 시절”을 지켜주는 장으로, 양성 평등

과 사회통합 등 사회의 기본 질서와 가치를 생애초기부터 경험하게 하는 중요한 장으로 인식하는 철학적 측면은 우리나라 육아지원 정책의 방향성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하겠다.

• 참고문헌

- 나정 · 장영숙(2002). OECD 국가들의 유아교육과 보호정책 동향. 양서원.
- 서문희 · 양미선 · 송신영(2011). 우리나라의 보육실태와 외국 사례-공립보육시설, 보육비용 지원, 양육수당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 육아정책연구소.
- 요한나 에이나르스 도티르 · 쥬디스 와그너 엠틀. 『북유럽의 아동 기과 유아교육』, 한유미 · 권정자 · 신미자 옮김, 한권(2011). p493.
- 한경현(2010). 노르웨이 가족정책의 변화 과정 분석 : 정당의 정치적 행위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 2010 No.6.
- Cools, S., J. H. Fiva, & L. J. Kirkebøen(2011). Causal Effects of Paternity Leave on Children and Parents. CESifo Working Papers. No. 3513. p36.
- Hausmann, R., Tyson, L. D. & Zahidi, S.(2012). The Global Gender Gap Report 2012. World Economic Forum.
- Haug, K. H. & Storø, J.(2012). Kindergarten-a universal right for children in Norway.
- Johnsen, S.(2012. 11.). Women in work: The Norwegian experience. OECD Observer.
- Norwegian Ministry of Children, Equality and Social Inclusion(April, 2012). Family Policy.
- Norwegian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2009). The most important messages in White Paper No41(2008~2009) Quality in ECEC
- Norwegian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August, 2013).

-
- Gender Equality in Kindergartens.
- Norwegian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October, 2013).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ECEC) in Norway.
FactSheet.
- OECD(2013). Education at a glance 2013-country notes and key
fact tables.
- GMI RATINGS(2013). GMI Ratings' 2013 Women on Boards
Survey.
- Pissarides, C., Garibaldi, P., Olivetti, C., Petrongolo, B. &
Wasmer, E.(2003). "Women in the Labour Force: How Well is
Europe Doing?", Fondazione Rodolfo De Benedetti.
- Save the Children(2012.). 아동의 미래를 만드는 1,000일- 2012
어머니보고서.
- Scheistrøen, J.(June,2013). Undersøking om foreldrebetaling
I barnehagar, Januar 2013.
- Statistisk sentralbyrå · Statistics Norway(2012). Statistical Yearbook
of Norway 2012.
- Statistics Norway(May, 2011). Child-care, 2010.
- Statistics Norway(March, 2013). Population by age, sex, marital
status and citizenship.
- Statistics Norway(March, 2013). Indicators for gender equality in
municipalities,2011
- Statistics Norway(April, 2013). Births, 2012.
- Statistics Norway(June,2013). Households' payments in
kindergartens, price level survey, 2012/2013.

Statistics Norway(June, 2013). Kindergartens, 2012 final figures.

Statistics Norway(August, 2013). Cash transfers to families with children, 2012.

Statistics Norway(October, 2013).Accounts for private kindergartens, 2012.

Statistics Norway(November, 2013). Norwegian Labour and Welfare Service-StatRes, 2012.

Thorud, E., Haagensen, E., Henningsen, M.S., Hegna, M.(2012). International Migration 2010~2011: SOPEMI Report for Norway. Norwegian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 Norwegian Ministry of Children, Equality and Social Inclusion · Norwegian Ministry of Justice and the Police · Norwegian Ministry of Labour.

[참고 웹사이트]

매일신문(www.imaeil.com)

세이브더칠드런(www.sc.or.kr)

주노르웨이 한국대사관(www.nor.mofa.go.kr)

주한노르웨이 대사관(www.norway.or.kr)

한국일보(new.hankooki.com)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www.regjeringen.no)

OECD(www.oecd.org)

Statistics Norway(www.ssb.no)

The Norwegian Labour and Welfare Administration(www.nav.no)

World Economic Forum(www.weforum.org)

이정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학사, 석·박사)

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이세원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학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석사)

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세계육아정책동향시리즈 14

노르웨이의 육아정책 동향

발행인 · 이영

발행처 · 육아정책연구소

편역 · 이정원 · 이세원

발행일 · 2013년 12월

주소 · 110-734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33 안국빌딩 7층, 8층, 10층, 11층
<http://www.kicce.re.kr>

대표전화 · 02) 398-7700

팩스 · 02) 730-3313

인쇄 · 도서출판 한학문화 02) 313-7593(대)

ISBN 978-89-97492-81-7 93330

정가: 5,000원

